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 선고 2020가합51272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담당변호사 김정한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산 담당변호사 임승택

법무법인 삼우 담당변호사 김주식, 박재희

변 론 종 결 2021. 7. 2.

판 결 선 고 2021. 10.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2017. 6. 29. 피고에 대하여 2005. 7. 14. 발행한 약속어음채권과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차2056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한 소멸시효이익포기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89,533,141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02. 11. 27. ~ 2004. 2. 24.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합계 18억 6,000만 원을 대여한 후, 2004. 2. 26. E로부터 위 채무의 담보로 E이 진행 중이던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이하 '제1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한 건축허가권, 시공권, 유치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받았다.

나. 피고 등이 2005. 7. 8. 설립한 C은 E과, (1) C은 E에 제1 사업 자금으로 12억 원을 대여하고, E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건축주명의를 C로 변경하기로 하는 계약과, (2) C은 E이 제1 사업과 함께 추진하던 건물신축사업(이하 '제2 사업'이라 한다)의 토지를 자금이 부족한 E을 대신하여 매수하고 E이 C에 위 토지대금을 지급하면 그 소유권을 E에 이전하기로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5. 7. 15. 제2 사업 토지를 취득하였다.

다. E과 F(제1 사업 토지소유자로서 공동건축주이다)은 C로부터 위 나의 (1)항 대여금과 (2)항 토지대금 지급채무 등에 대한 추가담보를 요구받고 2005. 9. 16. C에 제1 사업 신축건물을 26억 원에 매도하고 건축허가명의를 C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제1 사업 신축건물에 관한 건축주명의를 2006. 11. 2. C로 변경되었고, 부동산가압류등기촉탁으로 제1 사업 신축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2007. 1. 22. C 앞으로 마쳐졌다.

마. D의 파산으로 선임된 파산관재인들은 2007. 10. 17. E과 C 사이의 위 다항 기재 2005. 9. 16.자 매매 및 건축주명의변경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C 등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

2013. 1. 17. 위 사해행위청구의 일부가 인용되고 'C은 D의 파산관재인들에게 가액배상으로 3,443,244,80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부산고등법원 2010나1128, 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같은 해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5. 12. 31. D의 파산관재인들로부터 선행판결로 확정된 C에 대한 가액배상청구권을 양수받았다.

바. 한편 제1 사업 신축건물에 대하여 2011. 6. 27. 강제경매절차(부산지방법원 G,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어 2017. 6. 29. 그 배당기일에서 원고는 선행판결을 가진 채권자(양수인)로서 1,201,644,336원을 배당받았고, 피고는 근저당권(채권최고액 9억 원,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자로서 10,736,082원,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차2056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가진 채권자로서 778,797,059원을 배당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2005. 7. 14.자 9억 원의 약속어음채권이고, 이 사건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은 2005. 7. 14.자 대여금채권으로 배당기일 당시 각 3년,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음에도 C은 피고에 대한 배당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였는바, 이러한 시효이익의 포기행위는 원고를 포함한 C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사건기록을 복사하고 배당요구권자들의 채권을 검토한 후 사건처리촉구신청과 배당배제신청 등을 하였으므로, 배당기일인 2017. 6. 29.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한 이 부분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배당기일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나 이 사건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C이 배당기일에서 이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시효이익포기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의 제척기간도와 주장에 대하여

1)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법 제406조 제2항), 여기에서 취소원인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불리하게 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 행위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15756 판결 등 참조).

2)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1. 2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사건처리촉구신청서, 배당배제신청서(배제신청의 상대방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 있지 않다) 등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 원고가 배당기일 당시 C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피고에 대한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멸시효이익포기의 의사표시(사해행위)의 존부에 대하여

1) 갑 제6 내지 8, 1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2005. 7. 14. 피고와 채권최고액 9억 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 제1조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기왕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증서 등의 채무와 발행배서 보증 인수한 모든 어음채무 및 수표금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같은 날 C은 H, E, I(당시 E의 대표이사이다), J(당시 C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다)과 공동하여 피고에게 액면금 9억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다) 한편 피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은 2005. 7. 14. 피고에게 월 3%의 이자로 대여한 5억 원의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이고, 피고는 위 지급명령신청서에 차용지불약정서, 영수증을 첨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7. 6. 20.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자로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그 내역서에 위 약속어음금 9억 원, 이 사건 대여금채권 원금 5억 원, 이자 1,731,369,863원, 독촉절차비용 229,660원 등 합계 3,131,599,523원을 기재하였다.

마) C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5억 원에 대하여 이의한 후, 피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허위채권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778,797,059원을 0원으로 경정하는 것을 청구취지로 기재한 배당이의의 소(부산지방법원 2017가합1441, 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지급명령을 가진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가 아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았다.

3)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명시되고 피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제출한 채권계산서 내역과 같이 이 사건 약속어음금 지급채무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2005. 7. 14.자 차용금채무도 모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C이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이의한 이상,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금전지급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1) 제1 주장: 사해행위인 C의 소멸시효이익포기의 의사표시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배당받은 789,533,14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제2 주장: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과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허위채권으로 이러한 채권에 기초하여 배당받은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피고가 배당받은
금액 중 원고에게 배당되었어야 할 367,407,92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가액배상 주장(제1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부당이득반환 주장(제2 주장)에 대하여

1) 먼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허위채권이라거나 그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그
채권이 성립한 2005. 7. 14.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할 당시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관한 차용지불약정서,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와 C은 월 3%의 이자로 정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기를 '건물이 완공되어 처분하는 대로'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2)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대여금채권에 관하여도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배당받지 못한 결과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배당받았으므로, 원고가 배당받은 금액은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나
허위채권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이 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덕식, 판사 명선아, 판사 이유섭